

#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

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불능인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1. 공고대상자

번호	성명	생년월일	발급기간	공고사유
1	이*주	2008.10.13.	2025.11.01. ~ 2026.10.31.	폐문부재
2	박*혁	2008.10.08.	2025.11.01. ~ 2026.10.31.	폐문부재
3	홍*아	2008.10.23.	2025.11.01. ~ 2026.10.31.	폐문부재
4	유*주	2008.10.09.	2025.11.01. ~ 2026.10.31.	폐문부재
5	김*경	2008.10.28.	2025.11.01. ~ 2026.10.31.	폐문부재
6	고*하	2008.10.30.	2025.11.01. ~ 2026.10.31.	폐문부재
7	신*성	2008.10.20.	2025.11.01. ~ 2026.10.31.	폐문부재
8	조*	2008.10.10.	2025.11.01. ~ 2026.10.31.	폐문부재
9	임*환	2008.10.18.	2025.11.01. ~ 2026.10.31.	폐문부재
10	양*희	2008.10.18.	2025.11.01. ~ 2026.10.31.	폐문부재
11	양*서	2008.10.16.	2025.11.01. ~ 2026.10.31.	폐문부재
12	소*희	2008.10.30.	2025.11.01. ~ 2026.10.31.	해외체류

2. 공고기간 : 2025. 10. 22. ~ 2025. 11. 5. [14일간]

3. 신청기관 :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

## 4. 준비물

- 1)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(사진부착)  
-증명서가 없는 경우,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또는 직계혈족이 동행(신분증 지참)
- 2)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1매(3.5cm×4.5cm)

5.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6. 문의 : 동탄3동 행정복지센터 (☎ 031-5189-4084)

2025년 10월 22일

동 탄 3 동 장

